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32
----------	-------

발의연월일 : 2026. 1. 2.

발 의 자 : 한정애 · 추미애 · 박홍근
이학영 · 서영석 · 박지원
김 윤 · 조인철 · 박희승
정준호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판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를 상대로 분양을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재의 강도가 낮아 온라인 기반의 불법 영업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자에게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였을 때에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동물 복지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판매할 것

제10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78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물을 판매한 영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③ (생략)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 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u><신설></u> ⑤ · ⑥ (생략)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u><신설></u> ② ~ ⑤ (생략)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 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 인한 상태에서 판매할 것</u>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제78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 여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동물을 판매한 영업자</u> ② ~ ⑤ (현행과 같음)